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150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6월 21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간을 조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수정함(안 제11조 제3항).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3항 중 “1년” 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	<p>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〈신 설〉</p>	<p>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.</p>	<p>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시장은 <u>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③ 시의회에서 <u>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.</u></p>